
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제4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화 실)